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이슈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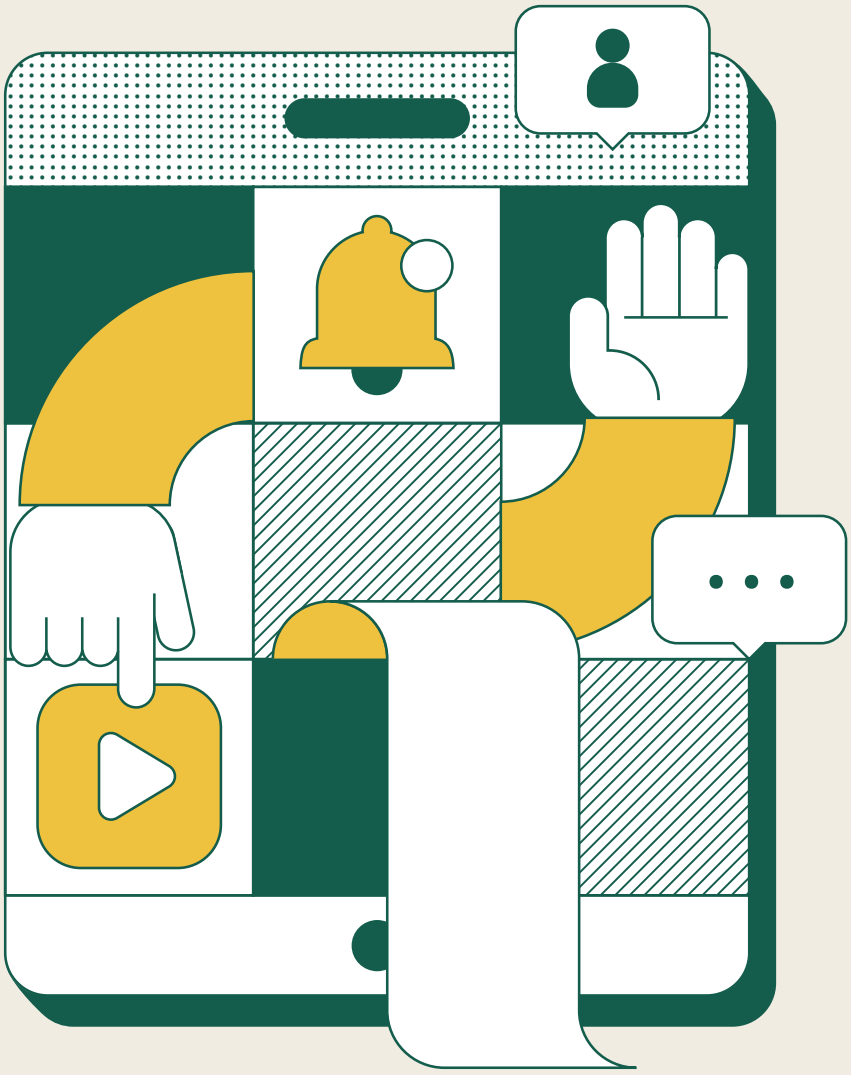

초록우산

국가는
기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지킬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한 디지털 환경의 차별화된,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영향을 특별히 고려하여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아동권리 침해 예방,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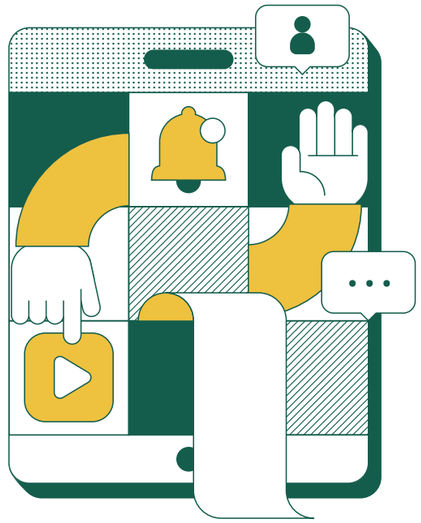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이슈브리프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란? 1
위험평가 제도의 필요성 1
해외 입법례 4
국내법의 현황과 개선방향 5
초록우산 온라인 세이프티 옹호활동 7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란?

소셜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가 전송·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 서비스 설계·운영 상태가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을 완화·관리하기 위해 플랫폼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험평가 제도의 필요성

아동 · 청소년 유해콘텐츠 노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 10대의 인터넷 이용률 99.5%❶, 숏폼 콘텐츠 이용률 94.2%❷,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26.5%❸,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 20.3%❹, 미디어 과의존 위험 청소년 21만여 명❺
- 이러한 지표들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유해콘텐츠·사이버폭력·과의존 등 다양한 위험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초록우산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유해콘텐츠의 노출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노출이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❶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❷❸ 성평등가족부,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❹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❺ 성평등가족부,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① 아동·청소년의 유해콘텐츠 노출 경험은?

조사기관	조사표본	조사항목
초록우산	숏폼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1,000명	플랫폼 이용 형태, 유해콘텐츠 노출 경험 및 영향, 플랫폼 아동보호장치 인지도&이용경험&효과성 등 총 17문항

유해콘텐츠 경험

'절반' 이상이 한 번이라도 유해콘텐츠에 노출되었으며, 그중 86%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노출되었습니다.

유해콘텐츠 노출 경험 한번이라도 / 유해콘텐츠 노출 경험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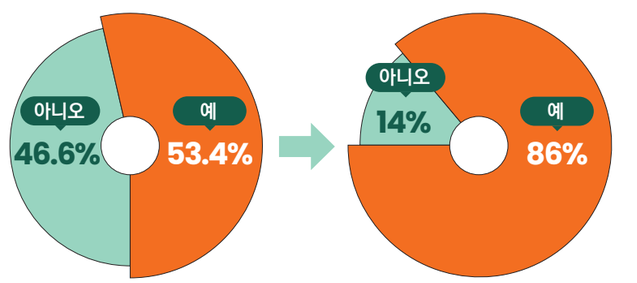

유해콘텐츠 유형별 경험

'성 관련 유해콘텐츠 경험(42.7%)'이 가장 높았으며,'섭식장애(18.8%)', '마약·도박(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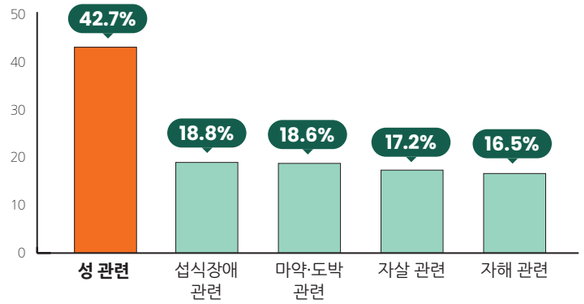

유해콘텐츠 노출경로

'추천 알고리즘(80.3%)'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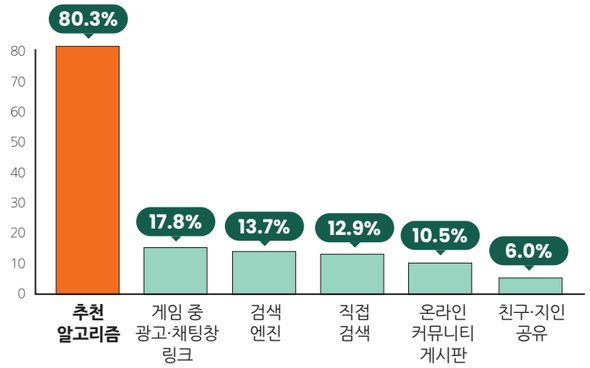

추천 알고리즘 제어기능 이용경험

62.1%가 추천 알고리즘 초기화·사용중단·새로고침 등 제어기능을 이용한 적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능이 있는지 몰라서(56.1%)', '위치를 몰라서(15.4%)', '이용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천 알고리즘 제어기능'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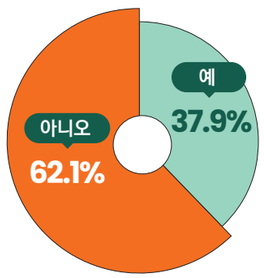

'추천 알고리즘 제어기능' 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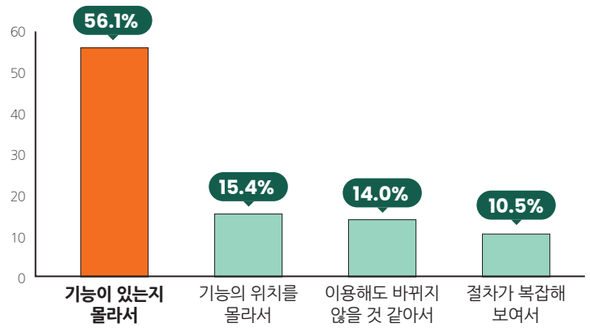

2 단 1시간, 아동·청소년 계정에 노출된 유해콘텐츠는?

-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유해콘텐츠 노출경로가 실제 플랫폼 이용 환경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가상계정을 활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 2011년생(만 14세)으로 설정한 가상계정을 만들고, 3개의 숏폼 영상 플랫폼을 관찰했습니다.
- 플랫폼별 유해콘텐츠 유형(성, 자살·자해, 섭식장애, 마약·도박)에 따라 가상계정을 각각 생성하여 관찰했으며, 총 12개의 가상계정을 운영했습니다.
- 각 가상계정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간접 키워드를 통한 탐색과 일부 직접적인 키워드 검색, 추천 피드에서 발견된 해시태그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계정당 약 1시간 동안 관찰하며 화면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유해콘텐츠 추천

'슬픔'·'우울'과 같은 키워드에서 출발한 경우, A플랫폼에서는 약 34분 만에 자해 도구를 추천하는 콘텐츠가 추천피드에 노출되는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B플랫폼에서는 약 48분 만에 자해·자살 암시표현을 담은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한 콘텐츠가 추천피드에 노출되었습니다. 해당 노래는 성인 인증을 해야 들을 수 있는 노래였지만, 숏폼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는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는 '#우울·#우울전시'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아동·청소년 계정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던 성 관련 유해콘텐츠는 A플랫폼에서 약 23분 만에 성 암시적 행위가 담긴 유해콘텐츠가 추천되었습니다. C플랫폼에서는 약 54분부터 57분까지 노골적인 언어를 연상하게 하는 유해콘텐츠가 연속 추천되었습니다.

연관 키워드의 확장

'몸매'·'데이트'·'돈'·'용돈벌기'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평가하거나 성적 의미를 강화하는 키워드(예: 몸매평가, 고해성사 등)가 포함된 콘텐츠가 노출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관된 키워드(예: 대리토토, 댈토 등)로 탐색이 연결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탐색할 경우, 아동·청소년 계정에서 별도의 우회 과정 없이 유해콘텐츠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출, 성인웹툰 광고 추천

A플랫폼은 아동·청소년 계정 추천 피드에서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대출광고와 성인웹툰 사이트 광고가 노출되는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해외 입법례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1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2022년 10월 유럽연합은 「Digital Services Act, DSA」를 통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콘텐츠 확산뿐 아니라, 기본권 침해와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등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과 콘텐츠 확산 구조 등 서비스 설계가 위험을 어떻게 발생·증폭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 완화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SA)」

2023년 10월 영국은 「Online Safety Act, OSA」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플랫폼사는 연령대별로 아동·청소년 이용자 수, 유해콘텐츠 노출 위험도 분석(서비스 내 알고리즘이 얼마나 쉽게,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콘텐츠를 전파할 수 있는지도 포함),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겪게 될 경우 서비스의 설계가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그 위험도의 완화·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평가 결과는 규제기관인 OFCOM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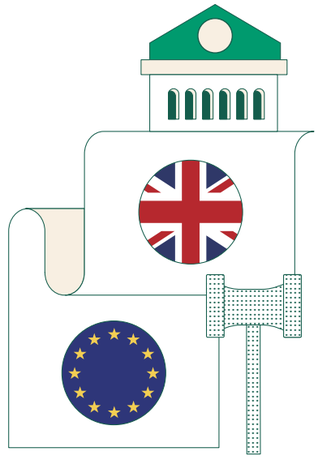

국내법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내법 현황, 사전예방체계 미흡

우리나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전 예방과 위험 관리는 대부분 플랫폼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제도적 예방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후대응적이고 자율규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플랫폼사가 자체 정책과 기준에 따라 유해콘텐츠를 관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추천 알고리즘·자동재생·연속노출과 같은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이나 공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플랫폼별 위험 대응 수준 및 양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계정을 활용한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일한 키워드에 따라 플랫폼마다 유해콘텐츠 노출 수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손목'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플랫폼별로 추천되는 콘텐츠의 유형과 맥락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부 플랫폼에서는 패션 관련 콘텐츠가 노출되는 반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자해와 연관될 수 있는 콘텐츠가 추천되었습니다.

각 플랫폼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콘텐츠 유형별 노출 수준과 위험 관리 방식에서는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플랫폼에 설계된 이용자 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수준과 일관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금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자살·자해·마약·도박 등 심각한 유해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들은 일상적으로 유해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법제는 여전히 사후 삭제나 신고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예방체계의 미흡은 아동·청소년을 불투명하고 통제되지 않는 디지털 환경에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율규제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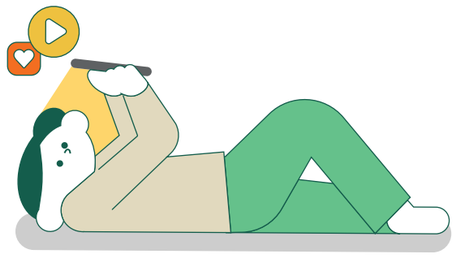

국내법의 개선방향,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법제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체제를 경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 현행 국내 법제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을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은「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연구」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플랫폼사의 사전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위험평가 제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전 예방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통한 위험평가 실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 전반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정부가 그 결과를 감독하는 형태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위험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체계 마련

위험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예방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평가 결과가 플랫폼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적 감독과 사회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사는 위험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주요 위험 요인, 개선·완화 조치의 내용과 이행 현황을 관할 정부·규제기관에 제출하고, 핵심 사항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위험평가 결과의 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평가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규제기관의 명확한 권한 설정도 요구됩니다. 규제기관은 플랫폼사의 위험 관리 조치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이나 시정 요구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와 공적 감독 체계는 위험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 플랫폼의 자율규제 수준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3 위험평가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위험평가 의무 이행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험평가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하게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와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시정명령·반복 위반 시 가중 제재 등의 단계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록우산 온라인 세이프티 옹호활동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초록우산의 노력

초록우산은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모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돌봄·자립·교육·건강·안전·주거 등의 영역에서 복지사업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법/제도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호·존중·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아동의 주요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나, 위험과 권리 침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초록우산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대응 아동보고서 발간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디지털 역량 교육지원 조례 제안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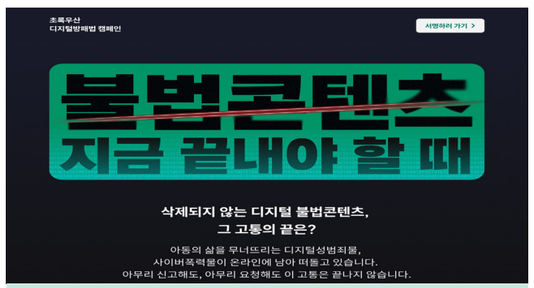

「디지털 방패법」 캠페인

온라인세이프티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초록우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온라인세이프티 옹호활동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동이 온라인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과 연구를 바탕으로, 누구나 아동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아카이브 살펴보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이슈브리프

발 행 일 2026년 2월 10일
발 행 인 황 영 기
편 집 인 김 승 현
발 행 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주 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전화번호 1588-1940

초록우산